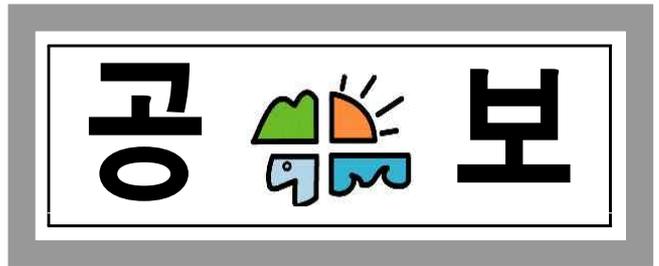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682호 2012년 3월 12일(월)

조 례

-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2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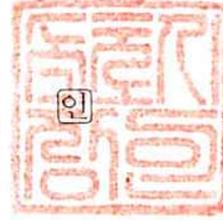
규 칙

-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회 람									
-----	--	--	--	--	--	--	--	--	--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등 생 인



2012년 3월 12일

속초시조례 제2291호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폐지조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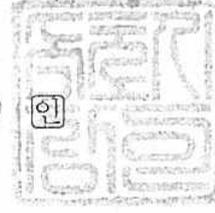
속초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속초시장 **채 등 새**



2012년 3월 12일

속초시조례 제2290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5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조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5호(중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3. 장애인 정책 및 복지에 관한 사항
- 14. 장애인 관련단체의 시설 운영·지원
- 15. 그 밖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호중 “노인·장애인”을 “노인”으로 하고, 같은조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3호 및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15호(중전의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8. 여성 및 노인·아동·청소년 관련단체의 시설 운영·지원
- 13.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전반
- 14.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 15. 그 밖에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가족에 관한사항

제4조(제17호)·제6조(제23호)·제7조(제13호)·제8조(제11호)·제9조(제12호)
제11조(제10호)·제12조(제17호),제13조(제21호),제14조(제12호)·15조(제18호)
제16조(제14호)·제17조(제8호)·제18조(제27호)·제19조(제15호)·제20조(제5호)
·제20조의2(제9호)·제23조(제26호)·제29조(제1호다목)·제29조(제4호라목)
·제29조(제6호아목)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중 “평생교육담당”을 “평생교육운영담당”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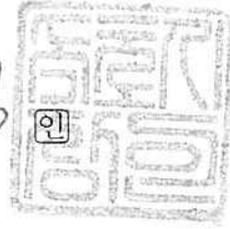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4.(생략)</p> <p>5. <u>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전반</u></p> <p>6. ~ 10.(생략)</p> <p>11. <u>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u></p> <p>12. (생략)</p> <p>13. < 신설 ></p> <p>14. < 신설 ></p> <p>13. <u>기타 주민생활지원서비스에 관한 사항</u></p>	<p>제5조(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4.(현행과 같음)</p> <p>< 삭제 ></p> <p>6. ~ 10.(현행과 같음)</p> <p>11. < 삭제 ></p> <p>12. (현행과 같음)</p> <p>13. <u>장애인 정책 및 복지에 관한사항</u></p> <p>14. <u>장애인 관련단체의 시설운영·지원</u></p> <p>15. <u>그 밖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장애인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 생략 ></p> <p>6. <u>노인·장애인 정책 및 복지에 관한사항</u></p> <p>7. < 생략 ></p> <p>8. <u>여성 및 노인·장애인, 아동·청소년 관련단체 및 시설 운영·지원</u></p> <p>9. ~ 12. < 생략 ></p> <p>13. <신설></p> <p>14. <신설></p> <p>13. <u>기타 노인·장애인·아동·청소년 및 여성 가족에 관한 사항</u></p>	<p>제10조(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5. < 현행과 같음 ></p> <p>6. <u>노인</u>정책 및 복지에 관한사항</p> <p>7. < 현행과 같음 ></p> <p>8. <u>여성 및 노인·아동·청소년 관련단체의 시설 운영·지원</u></p> <p>9. ~ 12 < 현행과 같음 ></p> <p>13. <u>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전반</u></p> <p>14. <u>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u></p> <p>15. <u>그 밖에 노인·아동·청소년 및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u></p>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속 초 시 장

채 등 새



2012년 3월 12일

속초시조례 제1282호

속초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조 제66호를 제72호로
하고, 같은조 제66호부터 제7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72호(종전의 제6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6. 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
67.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
68. 장애인 등록관리
69. 재가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
70.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
71. 장애인 보장비 구입비 지급
72. 그 밖에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25호부터 제30호까지 삭제하고, 같은조 제59호를 제63호로 하고,
같은조 제59조부터 제6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63호
(종전의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9.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
60.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
6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6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
63. 그 밖에 여성 및 가족, 노인·아동·청소년에 관한사항

제12조제27호 및 제2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0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2. 농공단지 입주 기업유치·육성지도 및 공장등록

제20조제17호를 제18호로 하고, 같은조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조 제18호(중전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2018전략사업 추진

18.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장활성화, 지역현안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 중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그 밖에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사항

제6조(제63호)·제7조(제52호)·제11조(제65호)·제12조(제29호)·제13조(제64호)·제15조(제55호)·제16조(제36호)·제17조(제44호)·제18조(제52호)·제19조(제58호)·제22조(제1항제6호)·제24조(제48호)·(제28조(제17호)·제29조(제30호)·제31조(제6호)·제32조(제11호)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13.(생략)</p> <p><u>14.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u></p> <p><u>15.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u></p> <p><u>16.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u></p> <p><u>17.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u></p> <p>18.~ 65.(생략)</p> <p><u>< 신설 ></u></p> <p>66. <u>기타</u>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5조(주민생활지원실) 주민생활지원실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 13. < 현행과 같음 ></p> <p><u>< 삭제 ></u></p> <p><u>< 삭제 ></u></p> <p><u>< 삭제 ></u></p> <p><u>< 삭제 ></u></p> <p>18.~ 65.(생략)</p> <p><u>66. 장애인 복지에 관한사항</u></p> <p><u>67.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u></p> <p><u>68. 장애인 등록관리</u></p> <p><u>69.재가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u></p> <p><u>70.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u></p> <p><u>71. 장애인 보장비 구입비 지급</u></p> <p>72. <u>그 밖에</u> 타부서에 속하지 않는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p>
<p>제10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4. < 생략 ></p> <p><u>25. 장애인 복지에 관한사항</u></p> <p><u>26. 장애인단체 지원 및 관리</u></p> <p><u>27. 장애인 등록관리</u></p> <p><u>28. 재가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지원</u></p> <p><u>29.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u></p> <p><u>30. 장애인 보장비 구입비 지급</u></p> <p>31.~ 58. < 생략 ></p> <p><u>59. < 신설 ></u></p> <p><u>60. < 신설 ></u></p> <p><u>61. < 신설 ></u></p> <p><u>62. < 신설 ></u></p> <p>59. <u>기타</u> 여성 및 가족,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에 관한 사항</p>	<p>제10조(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24. < 생략 ></p> <p><u>25. < 삭제 ></u></p> <p><u>26. < 삭제 ></u></p> <p><u>27. < 삭제 ></u></p> <p><u>28. < 삭제 ></u></p> <p><u>29. < 삭제 ></u></p> <p><u>30. < 삭제 ></u></p> <p>31.~ 58. < 생략 ></p> <p><u>59.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에 관한사항</u></p> <p><u>60. 평생교육 계획수립 시행</u></p> <p><u>61.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u></p> <p><u>62.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u></p> <p>63. <u>그 밖에</u> 여성 및 가족, 노인·아동·청소년에 관한 사항</p>
<p>제12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u>27.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에 관한사항</u></p> <p><u>28. 친환경 경전철 건설에 관한사항</u></p>	<p>제12조(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u>< 삭제 ></u></p> <p><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제14조(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생략)</p> <p>2. <u>농공단지 및 공장등록 육성지도</u></p> <p>3.~39.(생략)</p> <p>40. 기타 관내 가공식품 판로촉진 및 외국과의 수출협력에 관한 사항</p>	<p>제14조(희망일자리추진과) 희망일자리추진과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1. 현행과 같음</p> <p>2. <u>농공단지 입주 기업유치·육성지도 및 공장 등록</u></p> <p>3.~39.(현행과 같음)</p> <p>40. 그 밖에 관내 가공식품 판로촉진 및 외국과의 수출협력에 관한 사항</p>
<p>제20조(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6.(생략)</p> <p><u>< 신설 ></u></p> <p><u>17. 기타 투자유치 및 시장활성화, 지역현안 대책 추진에 관한사항</u></p>	<p>제20조(속초발전추진단) 속초발전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16.(현행과 같음)</p> <p><u>17. 2018전략사업 추진</u></p> <p><u>18.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시장활성화, 지역현안대책 추진에 관한사항</u></p>
<p>제20조의2(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u><신설></u></p>	<p>제20조의2(설악동재개발추진단) 설악동재개발추진단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p> <p><u>16. 그 밖에 설악동 재정비·재개발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u></p>